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추나요법을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,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,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19. 1. 17. ~ 2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.

- 1)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
- 2)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
- 3) 1) 및 2)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97